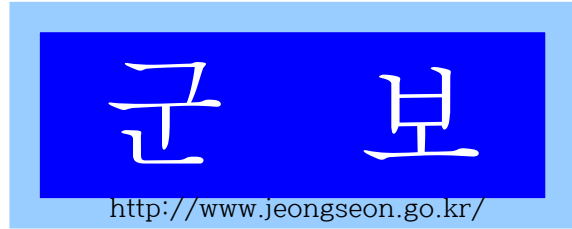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451호 2018. 6. 27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8-103호 병방산 군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고시.....3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8-668호 2018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추가 공고.....5
- 정선군 공고 제2018-676호 2018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(추가).....27
-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공고 제2018-1호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공인 등록 공고·29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18-103호

병방산 군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고시

「자연공원법」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강녹색 모험의 숲(숲속야영장)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26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명칭 : 동강녹색 모험의 숲(숲속야영장) 조성사업
2. 사업시행자
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환경산림과)
 - 나.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3. 시행근거 : 병방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(변경) 고시
(정선군 고시 제2017-121호)
4. 사업시행지의 위치·면적 및 규모
 - 가.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11번지 외 2필지
 - 나. 면적 및 규모

시 설 명	공 원 계 획 결 정(㎡)		공원사업 시행계획 인가(㎡)			비 고
	세부시설명	면적·규모	면적·규모	건축물 규모	비 고	
공공시설	매표소	112	112	56(1층/2동)		정선군 고시 제2017-121호 (2017.07.20)
문화시설	전시장	6,973	6,973	2,330(2층/2동)	구 분뇨처리장	
	자연학습장	10,926	10,926	-		
휴양편익 시 설	스카이워크	310	310	-		
	창 고	57	57	36(1층/2동)		
	공중화장실	112	112	19(1층/1동)		
	안전교육장	52	52	21(1층/1동)		
	야 영 장	3,175	3,175	-		
	청소년수련시설	8,257	8,257	-		
숙박시설	휴게음식점	144	144	45(1층/1동)		
교통 및 운송시설	주차장	1,549	1,549	-		
	도로(탐방로 포함)	16,074	16,074	-		

5. 사업시행기간 : 2018. 6. ~ 2018. 12.

6. 공원시설의 배치계획·기본구조 : “정선군 환경산림과 비치”

7. 편입토지조서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
				공 부	편 입	성 명	주 소	
1	정선읍 광하리	7-5	잡	9,064	6,973	정선군	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	구 분뇨처리장
2	정선읍 북설리	산111	임	510,835	16,597	정선군	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	
3	정선읍 굴암리	산200-6	임	12,549	6,958	국유지 (산림청)	-	

8. 공람 및 의견서 제출

가.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정선군 환경산림과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나.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정선군 환경산림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8-668호

2018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추가 공고

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보급으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“2018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8일

정 선 군 수

1. 지원대상 :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
 -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
 -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
2. 지원용도 : 주거용(주택용)
 -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(주민편의·사회복지용 제외)
3. 지원자격 :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,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
 -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
 -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정선군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4. 지원규모 : 총19대(1세대 당 1대)
 -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
5. 지원단가 : 1대당 지원액 보조금 70%(국고 30%, 지방비 40%), 자부담 30%

6. 지원범위 : 보일러(본체 및 연통, 연료통)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
7. 신청기한 : 2018. 11. 30.일한 해당 읍·면사무소에 방문 접수
※ 사업량 미달 시 연중 접수 가능
8. 신청서류 :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
(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첨부)
9. 문 의 처 : 정선군청 환경산림과(560-2169) 또는 읍·면사무소 산업개발팀

정선군 공고 제2018-676호

2018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(추가)

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기반시설의 규모화·현대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소득분야 농림자율사업에 대한 우리군 2018년도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25일

정 선 군 수

1. 2018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개요

- 신청기간 : 공고일부터 2018. 07. 31까지(사업비 소진시까지)
- 신청대상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산림조합 등)
- 지원대상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79개 품목
- 대상사업 : 임산물상품화,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, 친환경임산물재배, 산림작물생산단지(소액), 임산물생산기반조성, 임산물유통기반조성
- 접수처 : 군청 환경산림과(033-560-2169) 또는 e나라도움(www.gosim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대출신청자료(융자포함 경우)
-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: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

※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 시 향후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결격사유 해당

2. 사업별 지원사업 내역

○ 사업비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 세부내역(천원)						재원비율 (국:도:군:용:자)
		합 계	국비	도비	군비	용자	자부담	
합 계		1,183,299	241,441	71,198	283,487	269,434	317,739	
임 산 물 상 품 화 (포 장 재)	5개소	122,254	24,451	7,337	29,340	-	61,126	20:6:24:0:50
친 환경 임 산 물 재 배 (토 양 개 량 제)	1개소	3,000	2,100	180	420	-	300	70:6:14:0:10
친 환경 임 산 물 재 배 (유 기 질 비 료)	1,312 포	6,560	4,592	591	1,377	-	정액보조	70:9:21:0:0
산림작물생산단지(소액)	10개소	639,232	127,846	38,354	153,414	171,500	148,118	20:6:24:20:30
임산물생산기반조성 (산 림 버 섯 시 설)	1개소	9,995	2,002	601	2,387	2,002	3,003	20:6:24:20:30
임산물생산기반조성 (톱 밥 배 지 시 설)	1개소	19,200	3,840	1,152	4,608	3,840	5,760	20:6:24:20:30
임산물생산기반조성 (생 산 장 비)	1개소	18,860	3,770	1,131	4,534	3,770	5,655	20:6:24:20:30
임산물유통기반조성 (냉 동 유통 차 량)	2개소	40,000	8,000	2,400	9,600	8,000	12,000	20:6:24:20:30
임산물유통기반조성 (저 장 · 건 조 시 설)	6개소	314,198	62,840	18,852	75,407	77,022	80,077	20:6:24:20:30
임산물유통기반조성 (가 공 장 비)	1개소	10,000	2,000	600	2,400	3,300	1,700	20:6:24:20:30

○ 지원한도 및 사업내용

사업명	지원한도 · 지원단가 및 사업내용
임산물상품화	- 디자인개선 및 포장재 등 : 1건당 50백만원 이내
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	-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: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, 1건당 20만원
친환경임산물재배 (토양개량제)	- 토양개량제 :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- ha당 총사업비 4,750천원
친환경임산물재배 (유기질비료)	- 유기질비료 : 정액보조(2,000원/포(20kg)) - 혼합유박 : 정액보조(5,000원/포(20kg))
산림작물생산단지(소액)	- 산지정리작업,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, 관수시설, 작업로, 울타리 등 감시시설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, 관리사 등 - 임업인 1억원원 이내,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
임산물생산기반조성	- 산림버섯 재배 신규 및 보완(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, 관수시설, 냉· 난방시설, 침수시설, 종균배양시설, 장비 및 보완사업 등) - 톱밥배지 생산시설(혼합기, 교반기, 입봉기, 살균기,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, 톱밥배지 재배사 등) - 생산장비(농업용 굴삭기, 퇴비발효기, 선별기, 예취기, 기계화 전지기, 수집기, 임산물 수확기, 임산물 재배·생산 관련 기계·장비) - 임업인 1억원 이내,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
임산물유통기반조성	- 냉동유통차량 : 건당 20백만원 이내 - 저장·건조시설 : 건당 100백만원 이내(살균, 세척, 예냉 등 전처리시설, 저장·저온시설,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·시설 등) ※ 100㎡까지 가능 - 가공장비 : 건당 50백만원 이내(박피기, 건조기, 절단기,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탈삼제)

3. 사업별 사업시행 주요내용

○ 사업 대상자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[별표1] 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 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·가공·유통·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

<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>

종류(79개)	품 목 명
수실류(14개)	밤, 감(뚝은감), 잣, 호두, 대추, 은행, 도토리, 개암, 머루, 다래, 복분자딸기, 산딸기, 석류, 돌배
버섯류(8개)	표고, 송이, 목이, 석이, 능이, 싸리, 꽃송이버섯, 복령
산나물류(12개)	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참나물, 두릅, 원추리, 산마늘, 고려엉겅퀴(곤드레), 고비, 어수리, 눈개승마(삼나물)
약초류(18개)	삼지구엽초, 삽주, 참쑥, 시호, 작약, 천마, 산양삼, 결명자, 구절초, 약모밀, 당귀, 천궁, 하수오, 감초, 독활, 잔대, 백운풀, 마
약용류(20개)	오미자, 오갈피나무, 산수유나무, 구기자나무, 두충나무, 헛개나무, 음나무, 참죽나무, 산초나무, 초피나무, 율나무, 골담초, 산겨릅나무, 산사나무, 느릅나무, 황칠나무, 꾸지뽕나무, 마가목, 화살나무, 목단
수목부산물류(1개)	수액(樹液), 나뭇잎, 나뭇가지, 나무껍질, 나무뿌리, 나무순 등 나무(대나무류를 포함한다)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
관상산림식물류(6개)	야생화, 자생란, 조경수, 분재, 잔디, 이끼류

○ 지원자격 및 요건

- 지원 자격 : 생산자(임업인), 생산자단체

- 생산자(임업인)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“임업인”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2.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
3.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4. 「산림조합법」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
- 생산자단체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
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

"생산자단체"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3.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
4. 삭제 <2015.12.22>
5.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·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

○ 지원 요건

-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
 - *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,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
-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「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91조 [별표10]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’을 적용
- 저장·건조시설, 재배사 등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
 - * 단, 「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91조 [별표10]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’ 3.사후관리기준 마목에 따라 당해 개인, 법인의 명의를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
- 양묘생산자는 시·도지사에게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“종묘생산자 등록”을 받은 자
-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(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, 임업인종합연수원, 관련 대학 등)을 받은 자
 - *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
 - *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「종자산업법」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(자가소비는 제외)

-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(임)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우선 지원 가능

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28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

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,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○ 지원제한
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28조, 제63조 적용
-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지 변경,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

4. 사업별 자금의 사용용도

□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

가. 토양 개량제

구 분	세 부 기 준
지원대상	입상소석회, 탄산석회, 목탄, 목초액에 한해 지원 다만,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‘토양개량효과’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

- *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
- *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나. 유기질 비료

구 분	세 부 기 준
지원대상	부산물비료(2종, 가축분퇴비·퇴비) 유기질비료(3종, 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). 다만,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
지원방향	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·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·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·안전 임산물 생산·육성

- * 녹색제품(환경표시 인증제품, GR마크 인증제품) 우선 구매 유도
- *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(유기질비료지원) 준용. 단,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

□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

【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유의사항(공통)】

-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(객관적 자료 제시)
 - *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(산림경영소득과-1618, ' 14.3.28)에 따라 처리
-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% 이내로 가능하며,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(절토, 성토 등)은 지원 제외(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)
-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
- 산양삼 종자구입비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, 총 사업비 30% 범위 내에서 20만원/kg 이내로 지원
- 종자·묘목구입비(표고목, 톱밥배지 포함)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(객관적 자료 제시)
-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,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
- ' 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
 - * ' 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,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,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

《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》

- 지원 사업 : 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
- 지원 대상 : 임업인, 생산자단체
 - *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,0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(노지)하고 있는 자
 - *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(3년 이후 지원 가능)
 - 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- 지원 비율
 - 소액사업 : 국비(20%), 지방비(20%), 융자(20%), 자부담(40%)
 - *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(보조율 형평성 유지)
 - 공모사업 : 사업비 중 종자·종묘구입비(30% 이내)에 포함하여 지원
- 지원 기준
 - 본당 금액 : 3,760원(넓이 10cm × 길이 120cm)
 - 면적당 본수 : 1,000본/330㎡
 - *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(산림청 고시 제2014-59호)에서 표고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
 - 지원 한도 : (임업인) 3,000본 이내, (생산자단체) 8,000본 이내
 - *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
 - *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·종묘구입비(30% 이내) 내에서 지원 가능

가.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(공모)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선정기간
생산자 단체 및 전문임업인 (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인)	산림청	공모	4~8월

○ 지원 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산나물류·수실류 수목부산물류	관수시설, 작업로 시설,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, 액비저장시설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, 관리사 등
산림버섯류	재배하우스관정·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*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궤기, 가지치기, 솎아베기 및 관정·관수시설
관상산림식물류	조직배양을 위한 온실, 하우스, 관수시설, 자동화 시설, 분재수출 생산시설, 포트묘 생산시설,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
약용·약초류	산지정리작업, 울타리 등 감시시설, 관수시설, 작업로, 묘목식재, 종자파종, 관리사 등

- ☞ 관리사 규모(33㎡ 이하)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,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 또는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관리사(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)에 한하여 설치
- ☞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(공모사업, 소액사업)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
- ☞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「산지관리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

○ 세부지원 기준

구 분	세 부 내 용
면적기준	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 : 25,000㎡/개소 이상 * 단기소득 임산물 중에서 1개 단지 규모가 25,000㎡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
	저장·건조시설 : 50㎡ 이내(단기소득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함)
	산림버섯류 : 3,300㎡(1,000평)/개소 이상(노지재배, 송이산 가꾸기 포함) * 톱밥배지 생산시설(재배사 포함)은 건축면적 1,650㎡(500평) 이상
	관상산림식물류 : 1,000㎡/개소 이상(시설), 10,000㎡/개소 이상(노지) * 단,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
총사업비 기준	설계·감리비(5% 이내), 인건비(15% 이내), 기반 조성비(40% 이상), 종자묘목구입비(30% 이내), 기타 부대비(10% 이내) 등으로 구성

나.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(공모)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선정기간
전문임업인 (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인)	산림청	공모	4~8월

○ 지원 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	숙아베기, 천연림보육, 풀베기, 덩굴제거, 가지치기, 어린나무가꾸기, 산물수집,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
	특용수, 약용류, 산나물류, 산림버섯 등 생산기반조성
	관수시설, 보호울타리, 작업로, 감시시설, 모노레일, 액비저장시설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, 관리사 등 ☞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(50㎡ 이내)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
○ 세부지원 기준

구 분	세 부 내 용
신청 규모	(전문임업인)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1억원이상 5억원이내/개소(3년간 지원) *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,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* 이 경우 파쇄, 훈증,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%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
총사업비 기준	(사업 규모) 5ha~10ha미만 : 숲가꾸기 15%, 생산기반조성 85% 10ha 이상 : 숲가꾸기 20%, 생산기반조성 80% *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(100% 기준)는 설계·감리비(5% 이내), 인건비(15% 이내), 기반조성비(40% 이상), 종자·묘목구입비(30% 이내), 기타 부대비(10% 이내) 등으로 구성

다.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(소액)

○ 대상자 :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, 생산자 단체

○ 지원규모 : 생산자(임업인) 총사업비 8천만원 이내
생산자 단체 총사업비 1억원 이내

○ 지원 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	관수시설, 작업로 시설,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, 관리사 등
산림버섯류	재배하우스관정·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*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긋기, 가지치기, 솎아베기 및 관정·관수시설
관상산림식물류	조직배양을 위한 온실, 하우스, 관수시설, 자동화 시설, 분재수출 생산시설, 포트묘 생산시설,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
약용·약초류	산지정리작업, 울타리 등 감시시설, 관수시설, 작업로, 묘목식재, 종자파종, 관리사 등

☞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, 분재, 잔디,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(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)

*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 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(총 사업비 20% 범위 내, 20만원/kg 이내 가능)

라.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(소액)

○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

- 조경수, 약용·관상용식물, 표고 재배사(표고목 구입비 포함)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
- 종자채취 및 구입, 산지 묘포장 조성, 임내정리 및 식재 등
- 임간방목(염소 제외),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
-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(관리사)

마. 밤 대체작목 조성

○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·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 전환 조성비 지원

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

○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·품질검사 수수료 지원

구 분	세 부 내 용
대상	①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적합하여, 해당 시·군·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·식재한 자 ② 해당 시·군·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
지원내용	① (생산적합성조사) 토양, 종자·종묘 검사 수수료 ② (품질검사) 산양삼 검사 수수료
지원한도(권고)	생산자 1인당 2건 이내, 1건당 20만원 * 국비 8만원(40%), 지방비 12만원(60%)

- * 위의 사항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·군·구에 한하며, 시·군·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
- * 해당 시·군·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

□ 임산물 생산기반조성

- *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○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

구 분	세 부 내 용
산림버섯 재배신규 및 보완시설	원목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 시설지원(표고목 구입비 포함) * 비닐하우스, 관수시설, 냉·난방시설, 침수시설, 종균배양시설, 접종배양시설, 장비 및 보완사업비(통풍·관수·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) 등 지원
톱밥배지 생산시설	혼합기, 교반기, 입봉기, 살균기,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,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
임산물 생산기반조성	(밤나무 노령목 관리)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, 숙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
	(지상방제장비)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(차량제외)
	(친환경 방제장비)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,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*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 사용(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)
	(생산장비) : 굴삭기, 4륜구동 오토바이, 퇴비발효기, 선별기, 예취기, 기계화 전지기, 수집기, 잔디깎기, 임산물 수확기,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·생산 관련 기계·장비 *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,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*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*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,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단가를 적용 *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(선별 직경 등)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
생산시설	관수시설, 관정시설,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
작업로 시설	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, 시비,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(작업로 시설) *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
수실류 냉해예방시설	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* 밤, 대추, 뽕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·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

○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

구 분	세 부 내 용
관정시설	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*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(조경수, 분재, 잔디, 야생화 등)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* 조경수 관정시설은 재배면적이 1ha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*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
컨테이너 생산시설	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·공급 기반시설 지원 *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

3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단가적용 기본원칙

-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
- * 지원단가는 2017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 가능
-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
- *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,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(농협 등 구매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

○ 세부사업별 지원단가

세부 사업명	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	비 고
○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	- 밤 :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*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(밤의 1.5배) * 기타 임산물의 경우 “임산물 표준재배 지침”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	* 토양개량제 국 70% 지 20% 자담 10% * 유기질비료(20kg 당) 국 1,400원, 지 600원 * 혼합유박(20kg 당) 국 3,500원, 지 1,500원
- 토양개량제 지원		
- 유기질비료 지원	-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: ha당 총사업비 4,750천원(국고보조 3,325천원) * 입상석회 2,000kg/ha(2,500원/20kg):250천원 * 목탄분말 4,500kg/ha(15,000원/15kg):4,500천원	
○ 산림작물생산단지(공모)	- 노지재배: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- 시설재배: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	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
○ 산림복합경영단지(공모)	-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	
○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	- 총사업비 기준 -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	*산림복합경영사업 동일 적용
- 관수시설		
· 스프링클러	- 6,000천원/0.5ha	*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
· 점적	- 4,500천원/0.5ha	
- 관정개발(6인치, 일반형)	- 9,400천원/공	
- 보호울타리		
· 전기 울타리	- 1,500천원/0.5ha	*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, 2개 이상 견적서 기준
· 철조망	- 1,000천원/0.5ha	
· 감시카메라	- 조달단가 적용	
- 모노레일	- 1,500천원/0.5ha (동력운반기 기준)	*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, 2개 이상 견적서 기준
- 하우스 시설(관상산림식물)		
· 하우스 시설	- 250천원/3.3㎡	*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, 2개 이상 견적서 기준
· 유리 온실	- 800천원/3.3㎡	
· 아크릴 시설	- 1,000천원/3.3㎡	
- 송이산 가꾸기		
·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	- “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” 사업실행 기준	*불임참조
· 숙아베기	단가 적용	
- 생산장비		
· 건조기	- 실단비를 적용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기준	
· 방제장비		
- 토양개량비료	- 조달가격 적용	
- 종자·묘목대	- 실단비를 적용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기준	
- 인건비	- 해당연도 시중노임단가 적용(대한건설협회)	*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
* (산지정리, 작업로 시설, 제조작업, 묘목식재, 활엽 관목제거, 숙아베기 등)		

세부 사업명	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	비 고
- 산림복합경영(소액)	-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(국고 21.8백만원) *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	*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·조정 *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
- 밤 대체작목조성	- ha 당 총사업비 7백만원	
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	-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- 생산적합성 조사·품질검사 총비용 200천원/건 이내 지원	
o 임산물생산기반조성		
- 산림버섯 재배시설	- 총 사업비 기준(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,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) - 재배하우스 시설 : m ² 당(총사업비 기준) 55,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·조정가능 -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, 기계·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	
- 톱밥배지시설	- 톱밥배지시설 : 설계내역 기준 - 종균배양시설 : 설계내역 기준	
- 생산기반 조성 · 밤나무 노령목 관리 · 지상방제장비 · 친환경 방제장비 (포충등, 성페로몬 등) · 생산 장비 및 시설 · 작업로 시설 ·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 (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)	- ha 당 총사업비 1,292천원 * 숙아베기,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·조정 실행 - 실 단가를 적용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(조달 단가 우선 적용) - ha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- (장비) 실 단가를 적용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(조달 단가 우선 적용) - (시설)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- km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) 경사도 10°미만 4백만원, 10~20° 5백만원, 20°이상 6백만원 - m ² 당 국고 1,200천원(총 60,000천원) * 50m ²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	*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,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*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,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*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,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*경사도 35°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공모사업에 한함
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(관정, 컨테이너 등)	- 관정시설: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 (관수시설 포함) *1일 양수량 30톤이상,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- 컨테이너시설: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	*비닐온실, 관수 및 시비 시설, 용기 지원
o 표고목 구입비	- 본당 3,760원(W 10cm× L 120cm) - 면적당 본수 1,000본/330m ² - (임업인) 3천본 이내, (생산자단체) 8천본 이내	

□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

가.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(공모)

○ 대상자 선정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선정기간
생산자 단체	외부전문기관 (한국임업진흥원)	공모	4~8월

○ 지원 구분

- (일반)산지종합유통센터(물류/단순가공) : 총사업비 2억원~10억원
 - * 조합원·농업인 5인 이상, 총 출자금·자본금 1억원 이상, 법인 운영 실적 1년 이상 등
- (거점) 산지종합유통센터(거점/복합가공) : 총사업비 10억원~20억원
 - * 4시간 이상은 1일, 4시간 미만은 0.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
 - * 총 출자금 3억원 이상,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,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, 조합원(농업인 주주) 30명 이상인 법인
- (보완) :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·장비(총 사업비 1/3 이내)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[별표8]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기계·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

○ 지원 내용

구분	세 부 내 용
건축	집하장, 선별장, 저장시설, 건조장, 포장장, 품질검사실, 출고장, 일반창고, 사무실·회의실, 부속시설 등
가공장비	박피기, 건조기, 절단기, 분쇄기,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, 세척실, 가공라인 등
선별·포장	선별기, 박스제함기, 봉합기, 자동소포장기, 컨베이어 등
유통장비	운반차량, 냉동탑차, 지게차, 파렛트, 기타자재
위생·판매시설	오폐수정화·건물위생시설, 홍보·전시·교육장 및 판매
ICT융복합 SW	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

- * (사후관리)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후 산물의 판매는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·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·판매할 수 있음
- * (참고사항) 산지종합유통센터(신설·보완)는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 제1항 [별표 5]에 의한 우수관리시설(GAP시설)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, 취급하는 1차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

나.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(공모)

○ 대상자 선정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선정기간
생산자 단체	외부전문기관 (한국임업진흥원)	공모	4~8월

○ 지원 구분

-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·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(총사업비 10억원~20억원)
- * 조합원·농업인 5인 이상, 총 출자금·자본금 1억원 이상, 법인 설립 후 제품 생산·운영 실적 2년 이상,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

○ 지원 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가공활성화	임산물 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·규모화 가공시설,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(HACCP)의 생산·가공시설, 체험시설 등
건축	저장시설, 건조장, 포장장, 품질검사실, 출고장, 일반창고, 부속시설 등
가공장비	분리기, 발효기 등 가공장비, 세척실, 가공라인 등
선별·포장	선별기, 박스제함기, 봉합기, 자동소포장기 등
위생·판매시설	오폐수정화·건물위생시설, 홍보·전시·교육장 및 판매

- * (우선순위) :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우선선정
재료의 단순건조, 커팅,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

다. 꽃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('17년 신규 공모사업)

○ 대상자 선정 : 지자체별 지원 대상 수요조사 및 공모 선정

○ 지원 구분

- '15년 기후이변에 따른 꽃감 생산피해 관련, 재래식 건조시설 위주의 거점별 규모화·집약화 시설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(총사업비 5억원 이내/개소)

○ 지원 내용

- 꽃감 생산을 위한 저장·가공·건조·선별·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·유통시설
-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*, HACCP**에 적합한 위생시설 도입
 - *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‘우수관리인증(GAP) 시설 기준’ 적용
 - ** 「식품위생법」 ‘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’ 적용

□ 임산물 클러스터(공모)

○ 대상자 선정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선정기간
지방자치단체	외부전문기관 (한국임업진흥원)	공모	4~8월

○ 지원 구분

- 임산물 주산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임산물 생산기반, 가공·유통산업, 학교·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육성(총사업비 20억원 이내/개소)
- 소비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화, 가공제품 개발, 체험·관광자원 등 연계

○ 지원 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사업규모	설계·감리 5% 이내, 생산기반조성 20% 이내, 가공·유통시설·장비 30%이상, 연구시설 20% 이내, 연구개발비용 20% 이내, 체험·관광 사업 5% 이내
추진방향	클러스터 (지역단위 산업화) = 기반 집약화 (생산유통) + 전문가공 업체참여 (육성·지원) +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(학연 연계) + 체험·관광 (축제, 행사 등)

- * 다만,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(객관적 자료 제시)
- *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% 이내로 가능하며,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 (절토, 성토 등)은 지원 제외(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)
- *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

□ 임산물 생산·유통기반조성

가. 임산물 상품화 지원(소액)

○ 지원 대상 :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, 생산자 단체,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·법인

- *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

○ 지원 내용

-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 포장재 지원(‘임산물 표준규격 고시’ 산림청 고시 제2014-21호, 2014.2.21. 참고)
- 지리적표시 등록단체·법인은 총사업비 30%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

나. 임산물 유통기반조성(소액)

○ 지원 대상 :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, 생산자 단체

○ 지원 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운반차량	(일반차량) 관상식물류에 한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,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(도서지역 5ha 이상) 또는 시설재배 면적 3,300㎡ 이상인 경우 * 적재함 길이 2,500mm 이상
	(냉동탑차)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(생표고버섯, 복분자 등)
유통기자재	파렛트, 운반용 상자 등
저장·건조시설	살균, 세척, 예냉 등 전처리시설, 저장·저온 시설, 농업용 공기교반기,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·시설 등
가공장비	박피기, 건조기, 절단기, 분쇄기,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 품화를 위한 탈삼제

- * 저장·건조시설,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
- * 저장·건조시설은 50㎡까지 가능하며,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
- *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·기자재 구매 지원은 2/4분기 이내에
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
(단, 해당연도 사업 중 2/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/4분기 이내 집행)

다. 임산물 유통기반조성(곶감피해방지 저장·건조시설)(소액, '17년 신규)

○ 지원 대상

- '15년도 곶감생산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곶감 생산자, 생산자 단체

○ 지원 내용

- 곶감 건조·저장시설의 현대화지원 사업으로, 기존 유통기반조성 사업 중 저장·건조
시설의 지원내용과 동일
- * 단, '15년 곶감생산 피해 발생 인정된 곶감 생산자·단체에 한하여 지원

구 분	세 부 내 용
저장·건조시설	살균, 세척, 예냉 등 전처리시설, 저장·저온 시설, 농업용 공기교반기, 건 조선풍기 및 건조장비·시설 등

- * 저장·건조시설은 50㎡까지 가능하며,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

3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단가적용 기본원칙

-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
- *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,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(농협 등 구매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를 제출할 경우 단가 조정가능
- 각 지자체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은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며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세부사업별 지원단가

세부사업명	지원한도 및 지원단가	비고 (국:지:용:자)
○ 임산물 유통구조개선		
- 산지종합 유통센터	<조 성> - (일반) 총사업비 2억원 이상~10억원 이내 - (거점) 총사업비 10억원 이상~20억원 이내 * 집하·선별·포장시설, 저온시설(예냉고·저온저장고 등), 가공시설 등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 <보 완> 전체 사업비의 1/3 이내	5: 2: -: 3 (공모사업)
- 가공산업활성화	<조 성> 총사업비 20억원 이내	
- 꾹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	<조 성> 총사업비 5억원 이내	
- 임산물 클러스터	<조 성> 총사업비 20억원 이내	5: 5: -: - (공모사업)
○ 임산물 생산·유통기반지원		
- 상품화 지원	- 1건 당 국고 7백만원(총사업비 35백만원)	2: 2: 2: 4
- 유통기반조성	- 일반차량 : 국고 3백만원/건 - 냉동탑차 : 국고 4백만원/건 - 유통기자재 : 국고 4백만원/건 - 저장·건조시설 : 국고 12백만원/건 * 50㎡까지 가능하며,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- 가공장비 : 국고 3백만원/건 *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* 탈삼제 : 국고, 4백만원/㎏	
- 유통기반조성(꾹감)	- 저장·건조시설 : 국고 12백만원/건 * 50㎡까지 가능하며,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- 가공장비 : 국고 3백만원/건 *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	

*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

- * 검증된 기계·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

5. 행정사항

- 사업공고 : 2018년 6월 일
- 신청서 접수 : 2018년 7월 31일한
- 사업 신청자 심의 : 2018년 8월 24일한
- 보조사업자 선정 : 2018년 8월 31일한
- 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추진 : 2018년 9월 ~ 2018년 11. 30일한
-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: 2018년 12월

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공고 제2018-1호

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공인 등록 공고

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공인 규정 제9조 및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회의 공인 규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2일

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장

1. 공인의 등록 사유 :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설립에 따른 공인 신규 등록
2. 공인의 등록일 : 2018. 6. 19.
3. 등록 공인 인영 : 붙임

◆ 신조공인

공인명	서체	규격	인 영
강원남부권관광개발 조합장	한글전서체	2.7cm 정방향	
강원남부권관광개발 조합회의	한글전서체	3.6cm 정방향	
강원남부권관광개발 조합회의의장	한글전서체	3cm 정방향	
강원남부권관광개발 조합재무관	한글전서체	2cm 정방향	
강원남부권관광개발 조합지출원	한글전서체	2cm 정방향	